

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버티포트의 시설(제2조 관련)

1. 필수시설

- 가. 이착륙구역(TLOF, Touchdown and lift-off area)
- 나. 최종접근·이륙구역(FATO, Final approach and take-off area)
- 다. 안전지대(최종접근·이륙구역을 둘러싼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이탈한 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)
- 라.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(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운송 사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- 마. 그 밖에 모든 버티포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2. 필수 지원시설

- 가. 유도로
- 나. 계류장
- 다. 도심형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·정비 등을 위한 시설
- 라.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·관리시설
- 마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수의 버티포트 중 하나 이상의 버티포트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3. 부가시설

- 가. 버티포트의 운영 및 유지·보수를 위한 버티포트 운영·관리시설
- 나. 버티포트 이용객 편의시설 및 근무자 후생복지시설
- 다. 버티포트 이용객을 위한 업무·숙박·판매·위락·운동·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
- 라. 버티포트 운영·관리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
- 마. 그 밖에 버티포트의 운영·관리,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